

2015. 금연지도원 세부 교육자료

1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1 추진 배경

-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추진
※ 모든 실내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흡연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 및 청소년 등에 대한 흡연예방을 위하여 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과 담배판매 지정소매인에 대한 실태 점검 추진

2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3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실태점검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1 2015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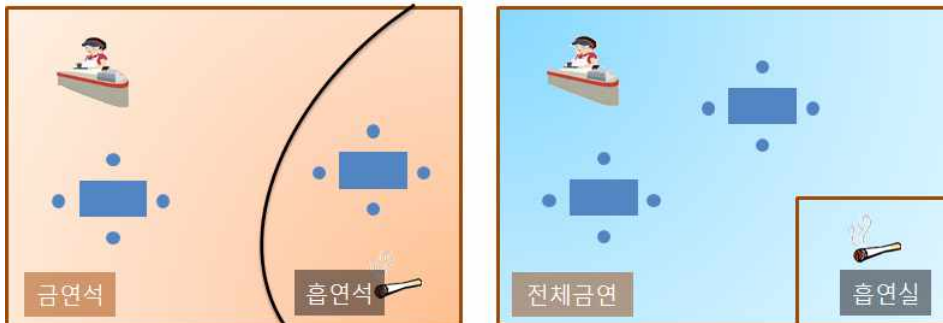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015년 흡연석 변경안내】

전

후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1)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건물 내 금연(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지정·관리(법제9조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금연구역 지정 방법(예시)】

1.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방송,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공지
2. 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법령 해석 참조

3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시행규칙 별표2)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금연구역 지정 방법(예시)】



- 표지의 설치 방법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부착하고,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에 부착하여야 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 *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연구역 표지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함

4 흡연실 설치·운영(시행규칙 별표2)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①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함(실내 설치 불가)

제6호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제8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제9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제11호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제12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제15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② ①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의 표지 설치(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흡연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을 알리고, 해당 시설내 흡연실 설치 위치를 알리는 표지도 설치
 - 그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결정하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 베란다, 테라스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시설 공용공간으로 보며 위치 및 구조 등 입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 실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여야 하며, 흡연실내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계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영업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자를 위한 의자 등은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3 금연구역 지도·단속

1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법 제9조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확대 추진
- 금연구역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전체시설 금연구역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2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부과금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미준수 : 500만원 이하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4

금연 지도·단속 요원 운영업무 매뉴얼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위반(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위반(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용어 정의

1.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담배사업법)
2. “흡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 *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
 - * 전자식 흡연욕구저해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제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재제하여야 함

4 단속절차

1.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2.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PDA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하여 공권력 집행 철저
 - ※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4.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 * 의견제출 기한은 지자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름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5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내 흡연 : 10만원

※ 조례에 의한 시설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위반 : 고발 조치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